

헌 법

1. 헌법의 제·개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③ 헌법개정 무한계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
- ⑤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국적(國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부계혈통주의 원칙은 출생한 당시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위헌이다.
-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그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위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 ③ 복수국적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복수국적자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기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 정부의 보호의무에 속한다.
-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무는 독립유공자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여 원폭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한다.

4. 한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다.
- ③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 폐단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④ 제헌헌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제정되었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 ⑤ 제헌헌법에서는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은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과 같은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②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③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정당설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정당설립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6.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자연과학적 인식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④ 고용허가자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7.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부과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 ⑤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 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다.
- ②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률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 ④ 보험회사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다.
-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9.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공공성이 있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서울광장으로의 통행제지행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10.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금지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더라도,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지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 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데, 여기에 더하여 텔레비전 시청까지 제한되면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④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⑤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1.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 ② 이중처벌금지는 징계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절차 또는 형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③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 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개념 요소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 ②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 ④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포함된다.
- 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사례 중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샘플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
- ② 지적촉광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 유치원 주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
-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것
- 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

14.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②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④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 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⑤ 불완전입법에 대하여 재판상 다툼 경우에는 그 입법규정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5.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제정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재판부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인 당사자는 자신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④ 법령규정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권력 작용에 대해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17. 탄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함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 ③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④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의 이유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18.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공개는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한다.
- ②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개대상인 회의에는 위원회의 회의도 당연히 포함된다.
- ③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지만,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 ⑤ 국민은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19. 정족수가 같은 것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임시의장 · 상임위원장 선거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 ② 계엄의 해제요구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 ③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의결 - 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 의결
- ④ 의원의 제명 - 의원자격상실의 결정
- ⑤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 변안동의의 의결

20.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국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이라 한다.
- ② 병역거부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에 근거한 대체복무제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③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된다.
- ④ 침묵의 자유는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의 진술을 거부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 ⑤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부적당한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관련 범죄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는 알 권리의 과잉침해가 아니다.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 ②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소속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중구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권한쟁의심판의 강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으로(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4.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전형적인 정당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속한다.
- ③ 대통령의 공식기자회견은 탄핵요건인 직무수행의 범주에 속한다.
- ④ 대통령은 합의제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 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

2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